

검 토 의 견 서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821)

-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1호,
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예외 대상에
“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”를 추가하여
심의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심의 절차의 반복을 예방하여 행정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
기대되는 바,
-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,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